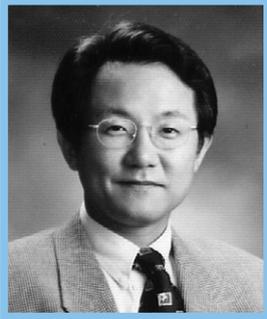


삶의 마감방식의 결정에 대한 한국의 과제

Agenda for End-of-Life Decision-Making in Korea



손 명 세 | 한국의료윤리학회 회장/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 Myongsei Sohn, MD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E-mail : msohn53@yuhs.ac

J Korean Med Assoc 2009; 52(8): 734 - 737

Abstract

After a year of court trials initiated by the immediate family of a patient in a permanent vegetative state, the National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the family have the right to decide for the removal of ventilator from the patient. This was a particularly significant court case that established a precedent for the Korean society as a whole, since there currently is no statutory framework regarding rights to self-determination to refuse any extraordinary means of treatment in Korean legal system. While much of Korean healthcare providers and the government itself have focused on designing and developing a comprehensive blueprint for Advance Health Directives for patients, the recent outcome has created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all parties of the Korean society.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and legislature will need to systematically study and establish a procedural preparation for legislation. The providers will also have to carefully examine the moral and ethical dimensions of Advance Directives to promote the patients' interests in accordance with civil rights of the patients. Lastly and most importantly, the individuals must reflect on our own moral values, regardless of their current health. To exercise their own will and to relieve their relatives from difficult decisions, they must also educate themselves about living will and healthcare proxy, and elucidate their value history with family. No one can exactly lay out the course of life to death, but it is possible to steer the final journey of life to a more humane death. A society must value the life itself, but the journey to death should also be made humane by respecting one's own choice.

Keywords: Advance Directive; End of life decision making; Patient self determination; Supreme court decision

핵심 용어: 삶의 마감결정; 환자의 자기결정권; 연명치료중단

카렌 퀴란(Karen Quinlan), 연명치료중단, 존엄사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하면 언제나 그 화두에

언급되는 이름이다. 1976년 1월 미국 뉴저지 주 대법원은 식물인간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한 호흡을

유지하며 연명치료를 받고 있던 퀴란에게 만장일치로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고,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령하였다. 대법원이 그러한 판결을 한 것에는 그녀가 평소 TV를 보면서 친구에게 ‘내가 TV 속 환자와 같이 식물 인간 상태가 된다면, 더 이상 치료받고 싶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환자 본인이 코마 상태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 보호자가 환자의 권리를 대리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물론 환자의 대리인이 안정적이고 환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퀴란은 곧바로 사망하지 않았다. 사회 전체가 들끓었다. 병원 의료진의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죽음에 관한 정의와 시험, 새로운 치료거부권의 개념을 도입한 뉴저지 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의 여론이 비등하였다. 한 인간의 삶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에 대하여 약간의 증거만으로 추정할 법원의 경솔함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생명 존중론자들의 목소리가 미국사회를 덮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후, 낸시 크루잔(Nancy Cruzan)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국의 다른 지역인 미주리 주 대법원에서는 퀴란 사건의 영향으로 환자의 의사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영양공급 중단을 불허하는 판결이 나왔다. 미주리 주 대법원은 “주 정부는 삶의 질과 무관하게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주의 이익에 합치하여 판단능력이 없는 환자에 대한 의학적 지원을 중단하려면 아무리 그의 부모가 강력히 원한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고 확실할 만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가 있어야만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미주리 주 대법원의 판결이 뉴저지 주 대법원의 카렌 퀴란 케이스와 다르게 나오자 언론에서는 이를 대서특필하였다. 이로 인해 낸시 크루잔은 사회적으로 유명해졌고,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이 곳곳에서 등장하였다. 결혼 전 그녀의 성(姓)이 크루잔이 아닌 데이비스라는 사실이 언론의 보도과정에서 알려지자 그녀를 아는 많은 친구들이 증언하였다. 각각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낸시 데이비스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가족 이외의 신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나서자 낸시 크루잔의 가족들은 주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을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렌퀴스트(Rehnquist) 대법원장은 미주리 주의 판결을 검토하면서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사항을 선언하였다. 첫째, 판단능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비록 치료를 거부하면 죽을 수 있더라도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크루잔 사건은 원하지 않는 의학적 지원으로부터 자유로운 헌법적 권리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둘째, 연방대법원은 영양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다른 종류의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인공호흡기 제거는 허용하면서 인공 영양공급 중단을 허용하지 않는 몇몇 주의 법률은 위헌이 되었다. 셋째, 판단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와 관련하여 “주는 영구적 혼수상태에 빠진 사람이 판단능력이 있었을 당시에 원하였을 것에 관하여 명백하고 확실할 만한 증거기준(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을 충족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크루잔 가족은 그 증거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낸시 크루잔의 급식관은 제거될 수 없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낸시 크루잔 판결은 카렌 퀴란 케이스에 비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절차상의 흠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 사회가 또 한번 진통과 논란을 겪었다. 그리고 연방의회에서 탄생한 법률이 1991년 제정된 연방법인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법률(Patient Self-determination Act)”이다. 이 법률로 인해 환자의 주관적 실제 의사는 문서 또는 구두로 표현되어야 하고, 명시적 표현이 없을 경우에는 병원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환자의 진정한 의사에 대한 해석과 의학적 상태를 집단적으로 검증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게 되었다. 카렌 퀴란과 낸시 크루잔이 그런 상황을 꿈꾸지는 않았겠지만 두 사람 덕분에 미국 사회는 보다 발전된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우리 사회는 미국보다 늦긴 했지만 지난 1년 동안 미국이 30여년 동안 발전시켜온 논의를 압축하는 예지를 보여 주었다. 2009년 세브란스병원 사례에 대하여 언론에서는 ‘김 할머니’라고 하여 실명을 거론하는 것을 꺼리고 있지만, 필

자는 환자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는 차원에서 실명을 밝히도록 하였다. 김옥경 할머니는 보호자들과 함께 원고 대리인을 통해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용기있는 행동이었다. 1심 재판부는 어렵게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다. 할머니의 생명이 경각이라고 판단하여 정교한 논리보다는 현상을 타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병원은 윤리위원회를 폭넓게 구성하여 논의의 외연을 넓히는 한편, 대법원으로 직행하는 비약상고를 통해 단지 일개 사건으로 묻히지 않고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받고자 했으나 결국 고등법원으로 가게 되었다. 고등법원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에 1심에 비해 논리적으로 향상된 판결을 내려줌으로써 최종 결정은 대법원 상고심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배당하고, 공개변론까지 진행하면서 우리 사회의 범조지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연명치료중단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환자 본인의 치료중단 의사를 인정하였다.

우리나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의사결정도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의사결정의 다원성과 민주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소수의견이 무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기본 원칙에 충실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법원은 김옥경 할머니의 치료중단 의사를 인정한 판결 이유로 다수의견을 9쪽에 걸쳐 기술하였고, 소수의견은 본인의 의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과 회복 불가능한 사망과정에 진입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아 다수의견보다 훨씬 더 길게 32쪽에 걸쳐 기술하였다. 소수의견을 가진 법관은 자신의 견해가 후일 언젠가는 다수의견으로 바뀔 것이라는 믿음으로 소신을 피력하였을 것이다. 세브란스병원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대법원이 보여준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은 법률 해석논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극단적 의결일치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순화를 도모하는 모범을 보여 주었다. 다만 이 사례에서 보여준 모범적인 의사결정과정과 다른 케이스에도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는 여전하다. 우리나라의 대법관 1인은 연간 2,5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대법관의 업무과중은 대법원이

수행하여야 할 법령의 최종적 해석을 통하여 규범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법원의 기능을 방해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비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고허가제도(Certiorari)를 운영하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할 필요가 없는 사건은 대법원에서 받지 않는다. 따라서 연간 80여 건의 사건만을 판결한다. 그 결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논리는 엄숙하지만 아름다운 문장으로 사회의 흐름과 논리를 그리고 가치를 이끌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제 우리는 연명치료중단과 이의 실행을 위한 사전의료지시서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30여 년 동안의 경험을 뛰어넘는 응축된 힘이 필요한 순간이라 할 수 있다. 닥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할 수 있는 죽음은 무엇이며,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구체적 내용에는 어떤 것들을 포함시키며, 또한 누가 개입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더불어 그 간 이루어진 사회적 논의 결과의 완성도를 높이고 우리 문화에 적합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진척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존엄사, 연명치료, 소극적 안락사 등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여전히 생물학적인 측면의 죽음관이 묻어있고, 자신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위치로 환자가 전락해 있음을 반증하는 이들 용어의 적절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환자가 중심에 놓이는 용어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의사조력자살, 연명치료, 존엄사 등의 용어는 모두 행위의 주체가 의사가 되므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시각화하여 의료인과 환자 간에 형성되어야 할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자연사' 등과 같은 중립적 개념의 용어를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전의료지시, 사전고지, 사전동의서, 사전의사결정서, 사전지시서 등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는 이들 용어에 대한 정립과 개념 정의도 아울러 필요하다.

두 번째, 죽음이란 것은 타인이 결정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병원윤리위원회의 결정이나 재판관의 판시에 따라 자신의 죽음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죽음에 직면하는 방식에 대해 나름 고민해 보고, 이를 적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판례의 대부분은 사전의료지시서가 작성된 경우가 아니었으며, 사실상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는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사전의료지시서에 자세하게 기입하고, 의료에 관한 의사결정 대리인을 지명해 놓은 경우, 환자의 바람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법적 권위를 갖으며, 이는 생의 말기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환자와 동일한 입장을 견지해야 함을 의미하므로 법원으로 갈 필요가 없음을 뜻하게 된다. 따라서 환자, 가족, 그리고 의료진 간에 논의를 위한 출발점으로 사전의료지시서와 같은 양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환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것들이 정확히 기입된 경우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의무기록의 한 부분으로 포함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전의료지시서의 서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수술동의서 등과 같이 세부사항들이 포함된 양식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연명치료의 중단과 관련된 세부 요청항목들은 심폐소생술 중단, 인공호흡기 부착 거부, 기도삽관 거부 또는 기관절개술 거부, 인공영양 거부(경장영양 및 정맥영양 포함), 승압제, 강심제 등의 약제 투여 거부, 통증약제 요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세 번째, 사전의료지시서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할 경우,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는 안전벨트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소통을 위한 시발점으로 삼고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논의의 과정의 하나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사전의료지시서가 환자 또는

가족과의 의사소통 과정 중 하나라면, 논의의 진척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료진들의 의사소통 교육이 필요함은 두말한 여지가 없다. 환자가 어느 곳에 있든지, 원하는 순간에는 사용할 수 있게 사전의료지시서를 보건정보시스템 등과 같이 정보화 시스템 내로 편입시키는 제도적 장치도 요구된다.

김옥경 할머니는 우리 사회에 기념비적인 판결이 완성될 수 있도록 살아서 기다려 주었다. 그리고 호흡기를 제거했음에도 좀 더 살아서 논의를 확장시키라는 메시지를 던지셨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사회적 논쟁이 미진하다고 판단하시는 듯하다. 자신의 죽음 주장을 개별적 입장에서 이용하려하지 말고 정도로 접근하여 한국 사회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죽음을 맞이하는 양식을 만들어 내라고 외치고 계신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면서 사는지는 의문이다. 언제 어떠한 사고가 닥치거나 어떠한 질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삶의 한 가운데에서 죽음의 순간을 상상해 보고 나는 그 시점에 어떠한 사람들과 어떠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싶은지, 그리고 나의 시신이 어떻게 처리되기를 원하는지를 미리 고민해 보고 이를 미리 적어놓을 필요가 있다.

이제 쿤란과 크루잔과 더불어 김옥경 할머니가 지식인들의 머리속에 오래도록 남게 될 것이다.